



감 사 원

바른감사
바른나라

수신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임 선 수 귀하 (우137-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-3 신정빌딩 5층)
(경유)

제목 감사청구사항 회신(공익 2011-28호)

1. 감사원은 국민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2. 귀하께서 2011. 3. 17. 우리 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사항(접수번호 제2011-공익 28호, 「한-EU FTA」(잠정발효)구두합의 관련)에 대한 회신입니다.

3. 위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

2010. 10. 6. 양측이 정식서명한 「한-EU FTA」협정문 15. 10조(발효) 제5항 가호에 따르면 “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가 그들 각각의 관련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의 다음달 첫째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.”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위 협정문에서 “그들 각각의 관련 절차의 완료”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 등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의 구두합의 또한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를 전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따라서 「한-EU FTA」잠정발효와 관련한 위 구두합의가 외교통상부(통상교섭본부장)의 권한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

4. 이상과 같이 귀하가 제기한 “「한-EU FTA」(잠정발효)구두합의 관련” 감사청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청구사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「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끝.